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발의]

의안번호

2266

발의일자: 2022. 11. 10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,

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- 다. 지원사항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재원 지원 및 지원 방법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바.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2. 11. 11. ~ 2022. 11. 17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"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금천구"라 한다) 소속 공무원
 - 2. 금천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
 - 3. 금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
 - 4. 「청원경찰법」에 의한 청원경찰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신고 및 보호 의무)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·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,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.
 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·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 사항)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심리상담
 - 2.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
 - 3. 의료비
 - 4.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
 - 5. 신체적・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・연수 프로그램 운영
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.

- 제7조(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)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
 - 2. 안전요워 배치
 - 3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
 - 4.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
 -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재정 지원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제9조(지원 방법)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 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,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원 신청)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

-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지원 결정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·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원 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지 원 구 분	근 거	지 원 한 도	세 부 기 준
심리상담	전문기관 제6조제1호 위탁운영 등		
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	제6조제2호	금천구 법률고문 상담서비스 연계 등	
의료비	제6조제3호	20만원	1. 병원진료비 2. 약제비
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	제6조제4호	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	휴식시간은 공가 처리
교육·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	제6조제5호	전문기관 위탁운영 등	
그 밖의 사업	제6조제6호	예산의 범위 내	
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	제7조	예산의 범위 내	

[별지 서식]

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

발 생 일		부 서 명			
피해 공무원	○ 직급(위): ○ 성 명:	연 락 처			
민원 내용 (핵심사항 위주)	0 0				
공무원 피해내용 (구체적 작성)	0 0 0				
지원 신청 내용	심리상담() 법률 7 은행명 (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) ※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	계좌번호	(의료비 지	원 신청만 작성)	
증빙 자료 (의료비 지원의 경우)	진단서병원진료 및 약제비피해를 입증할 자료				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: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부서장: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금천청장 귀중

관계법령

□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18748호, 2022. 1. 11., 타법개정]

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)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·공정·친절·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·폭행,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2. 7. 12.] [대통령령 제32789호, 2022. 7. 11., 일부개정]

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)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"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
- 1.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·호출장치·보호 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
- 2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, 녹음전화 등의 운영
- 3. 폭언·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
- 4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
- 5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
- 6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고소·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 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
-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·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